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536호 2016. 5. 11. (수)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6 - 44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인가(변경) 고시 2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6 - 507호 마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3

거창군 공고 제2016 - 511호 「거창군 포상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인가(변경) 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사업목적 : 농지조성(과수원 조성)

2. 사업내역

(단위:천원)

위 치	사업시행면적(m ²)			개간 용도	사업 예정 기간	사업시행자	
	지 적	개간신청면적				주 소	성 명
		변경 전	변경 후				
웅양면 군암리 산149-4번지	98,952	4,600	4,427	과수원 조성	2016.1.22 ~ 2016.5.31	웅양면 구수길 203-4	김 은 주

3. 사업효과 : 국토의 효율적 이용 (농지조성)

4. 열람장소 :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(☎055-940-3544)

2016년 5월 9일

거 창 군 수

『마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』 보상계획 열람 공고

거창군에서 시행하는 『마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05월 09일

거 창 군 수

1. 사업내용

- 가. 사업명 : 마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
- 나. 사업위치 :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17-2 일원
- 다. 사업량 : 음식특화거리 조성 1식, 다목적광장 조성 1식 등

2. 보상계획 공고내용

- 가. 사업시행자 : 거창군수
- 나. 사업시행기간 : 2014년 03월 ~ 2017년 12월
- 다. 보상대상 :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(권리포함)
※ 개인별 보상 대상은 개별 통지함

라. 열람 및 이의제기

-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열람장소 : 거창군청 건설과(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)
※ 이의제기 : 열람기간 내 「거창군청 건설과(농업기반담당)」에 서면제출
※ 연락처 : 055-940-3542

마. 보상시기 :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 평가하여 개별통지(2016년 6월 이후 예정)

바. 보상방법 및 절차

- 보상금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의거 결정되며, 거창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-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→ 손실보상협의 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 시) → 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

사. 감정평가업자 추천 :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 1/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아.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,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,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.

※ 물건조서는 지면관계상 실음 생략(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)합니다.

자. 기타

-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의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- 주소나 거소불명, 수취인부재,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 끝.

『마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』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

1.제 목		
2.소유자 및 이해관계인	성 명(명칭)	
	주 소	
3.의 견		
4.기 타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16. . . .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의견 제출인 주 소 :</p> <p style="margin-left: 150px;">성 명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margin-left: 150px;">전화번호 :</p> <p style="margin-left: 50px; margin-top: 20px;">거 창 군 수 귀하</p>		
비 고	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

「거창군 포상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포상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5월 9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포상조례」
2. 개정이유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변경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시
3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
4. 소요예산 : 해당사항 없음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행정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○ 주소 : (우670-807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(행정과)

○ 전화 : 055-940-3175, 팩스 : 055-940-3169, 이메일: yl79@korea.kr

붙임 「거창군 포상조례」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
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5. .
제 출 자	행정과장

1. 제안이유

-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금지에 따른 서식 변경함

2. 주요내용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개정(안 별지 제4호서식)
 - 주민등록번호 ⇒ 생년월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과 협의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: 분석 및 반영여부 기술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공 적 조 서

(1)성 명											(한자)
(2) <u>생년월일</u>											(3)군번 (군인의 경우)
(4)본국(국적)											
(5)주 소											
(6) 직 업					(7) 소 속						
(8) 직 위					(9) 등 급 (직급계급)				(10) 근무기간 (수공기간)		
(11) 공적요지(50자 내외)					(12) 공적 분야코드				-		
(13)추천훈격								(14)추천순위			
조 사 자											
(15)소 속								(16)직 위			
(17)직 급								(17)성 명		인	
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margin-top: 10px;"> 추천관 직위 년 월 일 성명 직인 </div>											

관련법령

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[시행 2015.7.24.] [법률 제13423호, 2015.7.24., 일부개정]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3.24., 2015.7.24.>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24.>

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4.>

[본조신설 2013.8.6.]

[시행일 : 2016.1.1.] 제24조의2